

(가칭) 태화양정지역주택조합 모집재공고

조합원 모집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 모집공고는 가칭태화양정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위한 재공고입니다. 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조합원모집 계약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11조의3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7조의3에 의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후 수리함 [최초수리일자 : 2023년 09월 04일, 신고번호 : 2023-건축주택과-지역주택조합모집-1]
-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조합으로서, 세대별 전원 무주택이거나, 세대를 포함한 세대 일 중 1명에 한하여 추가거주전원적 85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 영 제21조)
- 본 조합주택의 조합원 재모집신고 수리일은 2024년 04월 18일 입니다.
- 본 사업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설지역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1번지 일원)에서 (가칭태화양정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및 건축심의, 주택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통하여 진행되며, 주택사업 관련 인-허가 진행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가칭태화양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재모집공고)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한 계약착오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고, 불이행 등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조합원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 반드시 확인)

1. 주택조합 발기인 등 조합원모집 주체의 명칭 및 주체				
상호명/직책	성명	공유번호/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조합추진위원회	박진건	617-82-87102	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로 555, 301호(양정동, 미소빌딩)	
추진위원장	박진건	591218-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11-2, 401호 (양정동)	052-289-8666
이 사	정일형	740403-1*****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로 186, 1303호 (학성동, 모아서티아워)	
감 사	김인순	730119-2*****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로 106번길 12,102호(무거동)	

2. 업무대행사			
법인 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명	대표 자
주식회사 에이지일부동산중개법인	180111-139516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장발2길 6, 303호 (예곡빌)	김 제 학

3. 주택건설 예정지의 지번, 지목, 면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업부지 지번 및 면적

행정구역	본 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1	대	297.9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3	대	344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4	대	57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8	대	16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10	대	12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13	대	11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0	15	대	14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1	1	대	24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1	4	대	49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4	1	대	553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4	4	대	13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4	5	대	109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	1	대	60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	5	대	25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	17	대	211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	18	대	34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	19	대	17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6	1	대	212

사유지 합계				4,972.9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6	7	대	5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23	21	도로	112
국, 공유지 합계				117
전체 사업 부지 합계				5,089.96 (약 5,090)

대지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625-1번지 일원	
지역 지구	일 반 상 업 지 역	
대지 면적	5,090.00㎡	
연 면 적	57,181.87㎡ (지상층 : 39,952.27㎡ / 지하층 : 17,229.60㎡)	
건폐율/용적율	66.46 % / 798.72 %	
규 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지하 5층~지상 41층	
건립 예정 세대수	총 366세대 아파트 304세대 (84A 76세대 / 84B 152세대 / 59C 76세대)/오피스텔 84㎡형 62실/근린생활시설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부대부리시설	욕 외	어린이놀이터(150㎡) 주민운동시설(150㎡)
육 내	관리사무소(100㎡) 어린이집(200㎡) 경로당(100㎡) 경비실(50㎡) 주민운동시설(300㎡)	

- ※ 상기 주택건설대지 필지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필지 상에는 일부 제한용역(가버분, 담류, 저장인 등)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전에 말소할 계획입니다.
- ※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추진위원회 서류실 및 주택공보관에 비치 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홍보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토지(권)획보 현황(면적, 울)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토지(권)획보현황(울)

구 분	주택건설대지의 현황(울)		토지사용권원 확보 현황(울)	
	면적 (㎡)	비율 (%)	등의 면적(㎡)	동위원 (%)
사유지 (18 필지)	4973	97.70	3,850.07	77.4%
국공유지 (합산시, 건설부)	117	2.30	-	-
합 계	5,090	100.00	3,850.07	77.4%

- ※ 상기 토지획보 현황은 토지사용권원확보(토지사용승낙) 현황으로 토지사용권확보가 아님을 주의 바랍니다.
- ※ 상기 현역은 인허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권원 확보 계획				
구 분	모집공고시	조합설립 접수시	사업승인접수시	착공시
토지사용권원 (토지사용승낙, 계약서)	50% 이상	80% 이상	95%	-
소유권 확보	-	15% 이상	95%	100%

- ※ 모집공고 수리된 시점부터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계획이며, 사업진행과정에서 따른 인허가 시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건설예정기간						
구분(타입)	84A	84B	59C	오피스텔	합계	건설 예정기간
세대수(예정)	76	152	76	62	366	착공일로부터 39개월

- ※ 상기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는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구분(타입)	84A	84B	59C	합계	모집 기간
세대수	76	152	76	304	2023년 09월 01일 - 2025년 08월 31일

- ※ 상기 조합원 모집 세대수는 조합설립인가 및 인-허가과정(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조합원 모집 신청세대수 총 1차 152세대, 2차 152세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법 제 54조에 의거 모집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권하여 일반분양 예정이며, 30(세대) 미만일 경우 일의 분양 예정입니다.

7.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타입	세대(상) 수	공급 면적(㎡)			기타 공용 면적(㎡)			계약면적 (㎡)	대지면적 (㎡)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소 계		
84A	76	84.98	26.16	111.14	2.92	47.27	50.19	161.33	13.05
84B	152	84.85	26.25	111.10	2.92	47.25	50.17	161.27	13.03
59C	76	59.68	21.60	81.28	2.14	34.57	36.70	117.98	9.17
(소계)	304	23,891.36	7,620.00	31,511.36	828.16	13,401.82	14,229.99	45,741.34	3,670.07
OT(62.5) /근린시설(소계)	62/1	6,267.20	1,614.21	7,881.41	207.14	3,351.98	3,559.11	11,440.53	917.93
합 계	366	30,158.56	9,234.21	39,392.77	1,035.30	16,753.80	17,789.10	57,181.87	4,588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x 0.3025 또는 ㎡÷ 3.3058)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호·층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비용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자별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 대지비용은 면적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 중첩, 호별, 주택공급면적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조합 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8. 조합원 가입신청자격,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항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양, 임차지 선양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㉔에서 같다.)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㉔에서 같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하여 추가거주전원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주(부동산관리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다.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정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p>신청자격</p>
<p>준비물</p>
<p>예) 조합신청영 수필증, 주민번호 750108-1***** 경우 → 홍길동7501 로 기재</p>
<p>본인 계약서</p>
<p>추가서류 (해당 경우)</p>
<p>구비서류</p>
<p>신청일시</p>
<p>신청장소</p>

- ※ 상기 내용 외 신청자의 세부적인 신청자격 및 조합원자격에 대해서는 [주택법]제11조, [주택법 시행령]제21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제52조, 제5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 신청자의 조합원자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승낙(또는 입사승인승인시)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안검cale,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되거나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금, 부담금 업무대행비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부담금 납부 시기 및 납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원 부담금									
구분	총부담금 (업무대행비 포함)	계약금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3차	계약금 4차	총도금	잔금 (업무수)		
		계약체결시(D)	D+30일	착공준회 개시일+30일	조합설립인가 회차별 지정일 (10%×호수)				
		부담금	업무대행비	부담금	업무대행비	부담금	부담금		
84A	374,400	6,900	13,100	7,800	12,200	20,000	10,000	209,460	94,940
84B	369,900	6,900	13,100	7,800	12,200	20,000	10,000	206,760	93,140
59C	271,550	6,900	13,100	2,800	12,200	15,000	15,000	147,750	58,800

- ※ 상기 조합원 부담금 납입금액 중 해당 금액만큼은 통한 중도금 대물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개발 투자 예정일 등 호수 지정을 사업계획승인 이후에 확정되며, 추경에 의해 지정되는 등, 호수별 부담금은 차질이 있을 수 있음
- ※ 중도금 납부 일자가 휴일 및 법정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함
- ※ 조합원 가입신청 시 납부하는 계약금 1차, 2차부터 완납되었을 경우에만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 ※ 업무대행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금 관리상 및 시공예상에서 인-허가상의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할 함
- ※ 사업 완료 전상 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원 부담금에서 상계처리 후 정산함
- ※ 조합원은 부담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치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부담합니다.
- 2. 선납 할인은 없습니다.
- 3. 납부액이 부족할 경우 조합원은 연체료, 부담금 순서로 정산되어 납부처리 됩니다.

업무대행비			(단위: 원)
구 분	84 (A, B)		59 C
업무대행비(VAT별도)	23,000,000		23,000,000

- ※ 조합업무대행비는 상기 부담금 일정에 따라 납부 합니다.
- ※ 사업계획상 업무대행비는 부담금에는 포함 되어있지 않으며 별도로 개발 납부 해야 합니다.
- ※ 신청금액과 관련된 업무대행비는 일정 시점이 되면 업무대행비 계좌로 이체 후 관리할 예정입니다.

- 발코니확장비
- ※ 발코니는 "전세대 확장형"으로 시공됨으로 발코니확장 계약은 조합 가입 계약자의 선택사항 의무계약으로 하되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상기 부담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주택형별 추가 사용 옵션 품목은 포함되지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추후 조합에서 별도 고지하기로 합니다.

- ③ 조합원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 상기 조합원 부담금은 사업부지의 매입비용, 설계계약, 설계계약 및 시공(예정사)의 계약적인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부가가치세 발생 시 별도)이며, 조합원 부담금 책정은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부담금은 예정금액이며, 이 외에 개별적으로 부과되고 조합원이 납부해야 하는 개별분담비용(사업부지 소유권인정 비용, 보존준비비, 상하수도인거부담금, 도시가스부담금, PF대출 등 금융비용(이자, 제반수수료 등 - 이하 "개별부담금"이라 칭함)은 별도로 조합원이 개별부담 하여야 합니다.
- ※ 향후 인-허가 및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사항 또는 사업추진 일정 지연, 토기제 상승 또는 시공비 변경, 시공사기 제하인 일 및 반토사기 준 공사가 발생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 발생될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시장 악화 및 공사 원자재 상승, 토지기제 상승 등으로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조합원 부담금 중 대출 이실 공사를 통한 중도금대출은 상기 조합원 부담금에서 제외(1-6까지) 대체당사이며, 중도금대출의 이자는 조합원에게서 공동으로 정산합니다.
- ※ 중도금대출은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후 대출 실금 기준을 통한 대출 조건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대출 미상환자 또는 조합원의 부 적절한 사유로 대출이 불가 할 시, 조합원은 상기 중도금 회차별 납부시점까지 자납 하여야 합니다.
- ※ 사업진행과정에서 토지소유권 이전을 위한 보릿지대출과 PF대출을 진행하며, 조합설립을 위해 필요 토지에 소유권 이전에 사전에 필요 한 경우를 위한 별도의 대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본 납부일정은 사업예견(인-허가 일정 및 금융대출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 본 조합이 지정한 사업의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시 조합가입계약서상의 연체료 적용됩니다. [선납 할인은 없음]
- ※ 조합원부담금(수수료)은 타입별 층수를 고려한 차등용 금융금액으로 사업계획승인 후 동호수를 확정 지을 수 있고, 조합총회를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확정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조합원 부담금 중에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제세공과금(취, 등록세, 인지세, 법무수수료, 채권합의금, 재산세 등)은 포함 되어있지 않으므로 조합원은 별도 부담해야 합니다. 단, 업무수 시 조합이 조합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모집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일반인(외)의 분양일 예정입니다.

- ④ 부담금 업무대행비 납부 방법

조합원부담금(신청금 포함) 및 업무대행비는 아래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실태확사가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아래 지정된 계좌 이외에 입금된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통지받은 납부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구분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신 청 금	국민은행 / 954201-00-095083	(주)무궁화신탁
부 단 금	국민은행 / 954201-00-095108	(주)무궁화신탁
업무대행비	국민은행 / 954201-00-095111	(주)무궁화신탁

- ※ 무통장 입금을 시 계약자 성명 및 주민번호 알차기름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통도금 및 잔금 납입 기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월말한 입금을 해도 모든 조합원의 입금 계좌 작으로 신청금 계좌로 입금된 업무대행비는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업무대행비 계좌로 이체 후 관리 리할 예정입니다.

10. 조합차지 관리주체 및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자금 관리 계획

- ※ 가입계약금 및 조합원부담금, 업무대행비는 해당 계좌에 조합원 각자가 계약자 성명으로 직접 납부하며, 자금관리대리사무사인 (주)무궁화신탁에 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 계좌 이외에 입금된 신청금 및 조합원부담금, 업무대행비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사업주체의 통지에 의해서만 납부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조합원부담금, 업무대행비를 모집공고 상의 신청금 계좌로 입금한 경우, 사업주체의 확인을 통해 조합원부담금, 업무대행비 관리계좌로 임의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 장소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당첨자 선정방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른 주택건설안 검cale에 의하여 확정 선정됨 ② 당첨자 발표일시: 위 ①의 방법에 의거 확정되는 일자의 7일 이내 ③ 당첨자 발표지: 우편 및 홈페이지 시연용 으로 개최됨

- 신청자가 신청 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 확정합니다.
- 신청한 정렬(타입별), 조합원모집세대수를 초과한 경우 가입 신청 접수 순서대로 당첨자를 우선하여 선정합니다.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①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조합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주택법 상 조합원 자격에 해당 하는 기간이 조합원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 ② 조합원 자격인정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시장·군·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주택건설안을 이용한 전산검색을 의뢰하여 [주택법 시행령] 제21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조에 따른 조합원자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1) [주택법]제11호에 따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는 경우
 - 2) 해당 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하려는 경우
 - 3) 해당 조합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승낙 또는 입사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 ③ 계약의 취소

- [조합원 가입계약서 제2조 제2항 하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본 계약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중도금 등 부담금을 2회 이상 연체하였을 때
 - 부적합한 전세행위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때
 - 본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원회)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때
 - 조합원 자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사업추진에 방해소해를 초래하였을 경우, 유사단체 결성, 입단의 대표권행사, 본 사업에 대한 비난, 허위사실 유포 또는 같은 호 조합에 피해를 가하는 때 또는 막대한 내용을 인터넷 및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 또는 방해를 가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감을 조성, 선동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에 혼란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칠 경우 조합규약에 의해서 제명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의 이행에 협조하지 않거나 계약에 정한 일의 등에 불응하여 사업 진행을 지연, 방해하여 온 경우
 - 본 계약 체결 후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관계법령 및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관할 조정의 조합원합의인 신청 심사에서 조합원이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다만, 이 경우는 본 계약의 해약 대상에 그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은 부담금을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하고 본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합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허위사실 유포 또는 막대한 내용을 인터넷 및 공공매체를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 또는 방해를 가하거나 조합원에게 불리한감을 조성, 선동하여 조합의 사업진행에 혼란을 유도하여 피해를 끼칠 경우 조합규약에 의해서 제명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이항청구 및 부적격자의 조합가입은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따른 권원은 주택법에 따라 통원토록 하며, 계약취소 시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환급한다.
 - 조합원 탈퇴 및 환급의 방법, 시기, 절차
 - 조합원 가입 계약일(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을 포함하여 30일(공휴일 포함)이내 계약해지(조합원 탈퇴)를 요청할 시에는 납부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여 주기로 합니다.
 - 조합원 가입 후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제명되거나 계약의 취소, 기타 사유로 임의탈퇴할 경우, 조합원은 가계세대의 총 부담금의 10%를 환급하기로 처리하고, 조합원이 납입한 기 부담금 납입금에서 조합 사업비로 충당 된 금액(사업비와 중도금 원금 및 기납부 된 중도금 대물)이자를 등제한 잔액을 환급하기로 합니다.
 - 가입 납입한 부담금 금액보다 발급금 및 공제 되는 사업비 등이 더 많은 경우, 부족분도 추가 청구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하고 연체료가 있을 시 위약금 순으로 먼저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단, 환급시기는 조합원이 탈퇴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6개월이 완료 되었을 때 환급하고, 위약금은 조합에 귀속되며 조합원이 납입한 업무대행비 또한 업무대행사에 귀속되며, 조합 별도 업무대행사에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조합원은 어떠한 인-허가사항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환급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하여 조합 및 "시공사"부종으로 금융기관 대출 발생 시 그에 대한 이자비용 의무는 조합에 해당 있으며, 환급일까지 납입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및 대출금, 미납 대출이자와 그 연체료를 환급금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환급일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조합 가입 계약일 · 계약 장소 등의 계약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입 계약일 및 계약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합 가입 계약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계약 장소

② 신청금(계약금) 납부계좌			입금자별 표시내용
	예금주		
	국민은행 954201-00-09508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계약자 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4자리로 기재 (반드시)
			예) 조합원 성명이 홍길동이면 조합원 주민번호 750108-1***** 일 경우 "홍길동7501"로 기재

- ※ 신청금 계좌에 반드시 가입신청자 성명, 주민번호 및 4자리 기재하여야 하며 미기재 시 입금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신청금은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시 계약금으로 전환되며 조합원부담금 및 업무대행비로 인분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시 계약금 납부 영수증으로 길들여져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계약서 제출한 구비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조합가입 철퇴 및 부담금과 업무대행비 등의 반환
<